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2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매·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임.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시책 참여가 쉽지 않아 공동사업 추진 등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본 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지원 및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 규정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안 제5조(협력지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 내 다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경영지원 등) 및 안 제8조(사업 지원 등)는 구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조합원의 수출 진

흥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홍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 장려를 위해 홍보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 결과

-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뜻함.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개정. 2019. 12.10.)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 조합, 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102,681개인데 반해, 이 중에서 594개의 중소기업만이 2023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 시 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임헌호·전승관·양송이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간 공동 구·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임. 그 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아 공동사업 추진 등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본 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협력지원,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10. 12.~ 10.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